

2021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일정 공고

2021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강원도지사

I . 시험일시 및 장소

채용분야	응시번호	시험일시	장소	응시인원	총인원			
공채(남)	561-011-0001~0474	5. 31.(월)		(오전) 08:30	80	80		
공채(남)	561-011-0475~0906			(오후) 14:00	80	80		
공채(남)	561-011-0907~1339	6. 1.(화)		(오전) 08:30	80	80		
공채(남)	561-011-1343~1819			(오후) 14:00	80	80		
공채(남)	561-011-1823~2265	6. 2.(수)		(오전) 08:30	80	80		
공채(남)	561-011-2269~2531				51	80		
건축	561-023-0001~0006			(오후) 14:00	2			
구조	561-081-0001~0079				25			
자동차정비	561-241-0006~0008				2			
구급(남)	561-031-0001~0156	6. 3.(목)	춘천 호반체육관 [붙임 15]	(오전) 08:30	80	80		
구급(남)	561-031-0162~0173				7	58		
구조수난	561-091-0004~0009				3			
소방관련학과(남)	561-151-0001~0266				22			
안전관리(가스)	561-203-0001			(오후) 14:00	1			
의무소방전역	561-231-0012~0071				18			
전기	561-273-0001				1			
정보통신	561-283-0004~0018				6			
공채(여)	561-012-0003~0365			6. 4.(금)			(오전) 08:30	45
구급(여)	561-032-0001~0196						38	
소방관련학과(여)	561-152-0017~0077		9					
빅데이터 분석	561-324-0002		1					

- 대 상 자 : 711명
- 시험종목 : 6종목 [붙임 1, 2]
- 준비물품 및 제출서류
 - ① 응시표, 신분증, 운동복(반팔, 반바지), 필기구
 - ※ 응시표는 필기시험 응시표와 동일
 -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단, 휴대폰 등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 신분증 사진 제외)
 - ② 기본증명서(본인, 상세) 2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잘못된 예 : 770913-1*****)
 - ③ 신원진술서(필히 사진 부착) 2부 [붙임 6] ※ (작성예시)를 참조, PC로 작성
 - ④ 신원조사용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2부 [붙임 7]
 -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붙임 8]
 - ⑥ 도핑테스트 동의서 1부 [붙임 9]
 - ※ 상기 서류는 필히 A4용지 단면 출력(양면 출력 금지· 모아찍기 금지)
 - ※ 편철순서는 ②→③→④→⑤→⑥ 순서(②이 맨위로 편철)
 - ※ 모든 서류는 필히 스템플러(호치케스) 사용금지, 클립 사용
 - ⇨ 주민센터 발급 서류 중 스템플러 찍혀있는 것 모두 제거
 - ※ 모든 서류 ‘서명’란은 필히 서명 (도장 X)

II. 도핑테스트

- 일 시 : 5. 31.(월) ~ 6. 4.(금) 체력시험(오전, 오후 구분) 종료 후
- 대 상 자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5%
- 선정방법 : 도핑테스트 방법 설명 후 무작위 추첨
 - 시험 전 도핑대상자 선추첨(대상자 비공개), 최종종목 측정종료 후 도핑위원이 별도 호명, 시료채취 후 귀가
 - 단, 중도포기자(불합격자 포함)는 도핑위원에 포기·귀가의사와 함께 도핑대상자인지 확인. 도핑대상자일 경우 도핑시료 채취 후 귀가, **도핑 불응, 무단퇴장 시 부정행위자 처리**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 공무원 임용시험 : 모든 공무원 시험임
- 유의사항 : 안내문 및 금지약물 [붙임 3, 4, 5]

Ⅲ.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지정된 시험장소에서만 응시가능(타 지역 및 타 시험장 응시불가)
- 시험장 교통편 및 이동 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 시험일시까지 시험장 입장하여 시험 감독관(관리관)의 안내·지시대로 이행, **미 입장 시 응시불가** * 시험장은 시험실시 건물이며, 주차장 및 체육관 입구 아님
- ※ (오전) 08:00 시험장 개방 / ^{08:30까지 시험장 입장가능} **08:31 시험장 폐쇄, 출입불가**
 (오후) 13:30 시험장 개방 / ^{14:00분까지 시험장 입장가능} **14:01 시험장 폐쇄, 출입불가**
- **신분증 미지참자는 체력시험 응시 불가**
 - 인 정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불인정 :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및 휴대폰 등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 신분증 사진
- 제출서류 중 기본증명서는 **필히 '상세'로 발급 / '일반'으로 제출 시 다시 제출**
- 시험장 물품 파손·훼손 등의 경우 수험생 본인 변상, 시험장 내·외 금연지역으로 **흡연적발 시 법적조치** * 경찰 및 체육관 관계자 단속 중
- 시험 중 바닥 미끄럼 주의 및 스파이크 신발 등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용품(기구) 사용금지, 시험본부에서 제공하는 시험용품 외 개인용품 사용금지
- ※ 스포츠 테이핑, 상처보호용 밴드만 가능
- ※ **특히 탄산마그네슘가루 및 붕대, 복대, 아대, 보호대 사용 금지**
 (근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제2항제4호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에 해당
- ※ **악력, 배근력** 종목에서는 **시험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반코팅장갑 사용**
- 시험 중 소지품은 본인관리, 분실 시 수험생 귀책
- 시험장 내 별도의 정수기 등 식수대 사용불가, 물·음료는 개인지참 (단, **물·음료만 허용되며 다른 제품은 섭취금지**)
- 부정합격(금지약물 복용·금지방법 사용) 방지 위해 도핑테스트 실시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 판정 시** 체력시험 합격에도 **당해시험 합격취소**
- 시험 종목별 순서는 시험실시 전(前) 추첨으로 조별 배정
-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시험 전 사전공개 없음. 시험 종목별 세부측정 기준(파울·경고기준, 진행방법, 유의사항 등)은 시험당일 안내

- 예정, 수험생 부주의 등(교육 미참석)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 귀책
- 시험본부에서 안내한 규정시간 미 이행 시 시험에 불이익 처분
 - 시험관계자의 지시 불이행 및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 미응시 시 추가시험 불가
 - 시험 중 타 수험생 사고발생(왕복오래달리기 등) 시 계속 시험 진행
 - ↳ 단, 긴박·응급상황 시 시험본부의 판단하에 일시중지, 해당 종목 1회에 한해 재시험 응시 가능
 - ※ 재시험 시점은 시험당일로 하며, 시간은 시험본부에서 결정
 - 시험 중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부상발생 시 수험생 본인 귀책, 그에 따른 시험 미응시 및 불합격 시 시험의 연기 또는 추가시험 불가
 - 시험장 내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 촬영금지, 시험 중 전자·통신장비(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소지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복장 및 용모는 시험 운영 과정에서 제재조치 예정, **특히 긴 손톱, 긴머리(머리카락 고정 시 허용), 후드티 착용 금지**
(근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제2항제4호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에 해당
 - 시험본부의 영상촬영은 시험관정 보조자료로만 활용하며 수험생 비공개
 - ※ 체력시험장 입장 시 영상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종목별 시험 종료 후 폐기
 - ※ 종목별 측정 시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종목을 실시한 후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영상 촬영 판독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이의제기 불가**
 - 6개 종목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해 합격자로 결정
 - 응시표 분실 시 '119고시 홈페이지'에서 재출력 가능
 - 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법령에 의거, 부정행위를 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시험 응시불가
 - 시험장 내에서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유발, 응시자 유의사항 및 시험관계자 지시불응, 대리시험을 의뢰한 사람·응시한 사람 등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및 기타 관련법령·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

-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 게재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기 공고문(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1. 2. 24.) 적용, 충분히 숙지 후 시험 응시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붙임 11]' 에 따라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장 환기 등 시험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 당부
- 감염병예방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는 지정된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

- 자가격리자, 확진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

① 신청일시 : 본인 시험전일 24:00

(예 : 6월2일 시험대상자는 6월1일 24:00까지)

※ 상기 신청일시 이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응시불가, 정상 사전 신청자는 별도시험일 및 별도장소 지정하여 개별통보. 단, 별도장소는 감염방지를 위해 실외로 지정될 수 있음

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붙임 10, 12, 13] 참조

※ 사전 신청은 상기 일시 내 신청하여야 하고, E메일 도착일시가 상기 지정일시를 경과하였거나 미신청 시 시험응시가 불가하며, 추후 미신청 자가격리자, 확진자가 지정 시험장 응시 시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 통보(감염병예방방법 위반 시 경찰통보)

③ 응시방법

(자가격리자) 6.4(금) 14:00 예정

(확진자) 퇴원기간을 고려하여 6.11(금)까지 별도시험 예정

- 응시 당일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코로나19 유증상자로 판단되는 경우 당일 마지막 순번으로 별도진행할 수 있음
- 필히 **마스크(K94) 착용, 시험당일 날씨가 더운 관계로 땀걸음 금지 (발열주의), 최종시험(면접)까지 해외 출입국 자제,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되지 않도록 개인건강 유의하여 시험응시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당부**

특히, 격렬한 몸풀기 등 준비(예비)운동으로 인하여 체온상승(발열) 시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시험장 입장에 근접한 시간에는 가급적 스트레칭에 한정, 체온관리 당부

- 전 종목 마스크 착용 후 측정(단, 왕복오래달리기는 미착용)
- 5종목 실시 후 시험장 내 복도대기 ⇨ 응시번호 순으로 시험장 입장
⇨ 왕복오래달리기 실시 후 본인의 최종점수 확인 ⇨ 귀가

IV 기타 안내사항

- 시험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및 시험본부의 사정에 의해 변경가능, 변경 시 ‘119 고시 홈페이지’ 또는 ‘강원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별도공고

※ 미열람·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 귀책

- 천재지변(폭우, 강풍 등) 시 예정대로 시행, 부득이한 경우 별도공고
- 체력시험 합격여부는 수험생 본인의 시험일시에 모든 종목 종료 시 개별 확인이 가능하며, 합격 확인되신 수험생은 향후 신체검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 6. 15.(화)

※ 신체검사 일정 : 6. 15.(화) ~ 18.(금) * 기간 내 실시한 신체검사만 인정

⇨ 신체검사 준비물 : 검사비(병원마다 상이), 사진(3cm*4cm) 3매

* 추후 서류전형 시 신체검사 결과서 3부 제출

⇨ 전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가능, 특히 강원도내 지정병원에서 검사예정인 수험생은 검사 실시 전 **사전예약(기간 : 6. 9. ~ 14.)** 필수

* 코로나19 감염방지 및 수험생 쏠림현상 방지로 인해 **사전예약제 운영**

병원명	주소	검사문의(예약)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033-258-2448, 9274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033-741-1670~2
강릉아산병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033-610-3698

⇨ 수험생 본인이 색각이상자(색맹, 적색약 등)라고 판단된다면 **아래의 신체검사 지정병원**이면서 **색각검사 지정병원**에서 검사 권고

병원명	주소	검사문의	색각문의
경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02-3400-1365	02-3400-1269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051-240-7830	051-240-73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055-360-1000	055-360-1446

본 공고문 및 모든 공고·안내사항은 '119고시' 또는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 「인사채용」'란 공지

- 원서접수 사이트 관련(응시표 출력,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합격자 발표 안내 등)
 - 문의처 : 에스이코리아(☎ 053-474-1212),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7294)
- 단계별 시험(필기, 체력, 신체검사,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 운영사항
 - 문의처 :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033-249-5104, 5363)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제외)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정방법 등
약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약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약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근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뺀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종 목	측정방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안 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별표 참조)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 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및 직업 “기타”)
- www.druginfo.co.kr
- www.kimsonline.co.kr

소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I 금지약물

-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제1항제6호 및 『인사혁신처고시』 2019-1호 [별표]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1)대사물질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드로스타논론(drostanolone)
 - ▶ 메티놀론(methenolone)
 - ▶ 메타스테론(methasterone)
methasterone(17 β -hydroxy-2 α ,17 α -dimethyl-5 α -androstan-3-one)
 - ▶ 스타노졸롤(stanozolol)
 - ▶ 1-테스토스테론(1-testosterone)
1-testosterone(17 β -hydroxy-5 α -androsta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클렌부테롤(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hydrochlorothiazide)
- ▶ 클로로티아지드(chlorothiazide)
- ▶ 푸로세마이드(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 메틸헥산아민(methylhexaneamine, dimethylpentylamine))
- ▶ 메틸 에페드린(methylephedrine)
- ▶ 에페드린(ephedrine)

1) 대사물질 :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 부프레노르핀 (Buprenorphine)
- ▶ 덱스트로모라미드 (dextromoramide)
- ▶ 헤로인 (diamorphine, heroin)
- ▶ 펜타닐 (fentanyl) 및 유도체
- ▶ 히드로모르폰 (hydromorphone)
- ▶ 메타돈 (methadone)
- ▶ 모르핀 (morphine)
- ▶ 옥시코돈 (oxycodone)
- ▶ 옥시몰폰 (oxymorphone)
- ▶ 펜타조신 (pentazocine)
- ▶ 페티딘 (pethidine)

II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 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붙임 6]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3.17.> 【 작성예시 】

(3쪽 중 제1쪽)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홍길동	한 자	洪吉童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123	【 사 진 】 반명함(3cm×4cm) 또는 칼라 사진파일 (JPG)	
등록기준지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 기재 → ‘기본증명서’ 참조						
주 소	주민등록표상 주소 기재 → ‘주민등록초본’ 참조						
실거주지	실재 거주지 주소 기재						
직 장	직장명 : 무직은 해당없음 소재지 : 무직은 해당없음			연 락 처	직장전화 : 무직은 해당없음 휴 대 폰 : E-mail :		
국 적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복수국적 국가명: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국가명:	배우자 및 자녀 국적		
자격·면허	모두 기재						
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정당·사회 단체 활동	<input type="checkbox"/> 있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input type="checkbox"/> 없음			. . ~ . .			
병 역	본 인	군 별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육군	0000 (병과)	병장	0000.00.00~0000.00.00		
	자녀 (성명)				. . ~ . .		
	자녀 (성명)				. . ~ . .		
학 력 (고교이상)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00고등학교	0000.00.00~0000.00.00		00 학과	-	00시·군	
	00대학(교)	0000.00.00~0000.00.00		00 학과	00(전문)학사	00시·군	
	00대학원	0000.00.00~0000.00.00		00 학과	00석사	00시·군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Table with 2 columns: 항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보유·이용 기간). Content includes: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국적(배우자, 자녀 포함), 자격·면허, 재산(배우자, 미혼 자녀 포함), 병역(자녀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업체명 등 포함), 해외거주사실(거주목적 및 동반가족 등 포함), 가족관계(부모, 자녀, 배우자 부모 및 북한거주가족 등 포함), 친교인물(성명, 직업 등 포함),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Table with 2 columns: 항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보유·이용 기간). Content includes: 정당·사회단체 경력,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Table with 2 columns: 항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보유·이용 기간). Content includes: 주민등록번호,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연락처: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사 진 】 반명함(3cm×4cm) 또는 칼라 사진파일 (JPG)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국 적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복수국적 국가명: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국가명:	배우자 및 자녀 국적			
자격·면허							
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정당·사회 단체 활동	<input type="checkbox"/> 있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input type="checkbox"/> 없음			. . ~ . .			
병 역	본 인	군 별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자녀 (성명)				. . ~ . .		
	자녀 (성명)				. . ~ . .		
학 력 (고교이상)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210mm×297mm [백상지(80/m²) 또는 중질지(80/m²)]

동 의 서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연락처

위 본인은 2021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른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확인절차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 . .

위 본인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자 - 자진신고시스템 운영 안내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본인)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별도 시험을 안내하고자 함

■ (대 상) 2021년도 강원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응시자 중

- ①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통지를 받아 본인이 신청한 응시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
- ②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응시자(유증상자 등)

■ (신청기간) 본인 응시 예정일 전일 24:00까지

- ※ 별도 시험 준비 등을 감안하여 신청기간을 최소한으로 한정함.
- ※ **응시 예정일 전일 24시까지 응시 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응시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응시 불가**

■ (신청방법) 시험 응시자가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 ① 강원도소방본부 채용담당자(033-249-5104)에게 상기 사실 유선 연락
본인 거주지역 관할보건소 담당자에게 상기 사실 및 시험응시자임을 알림
- ② 첨부서류 제출(e메일)

■ (첨부서류) 시험응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 통지서, 주치의 소견서(확진자만 해당, 응시가능하다는 내용 포함)

◆ 메 일 : ehdbs24@korea.kr ⇨ 상기 e메일 발송 후 필히 유선연락

■ (시험장 안내) 시험응시 신청자에게 장소 및 일정 개별 유선 통보

- (유의사항)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방역수준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3항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2021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응시자 협조 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KF94이상**) 여분 소지 권장
 -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장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고 개인 사용품은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시험 전이나 중에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 운영요원**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1.5m이상)**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 +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체력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최근 14일 이전 해외입국자 포함) → 응시자에게 별도 통보 → 별도장소 응시(별도시험장,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별도시험장 시험응시 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응시번호	
현 주소지			
격리기간	2021. . . ~ . . .	관할 보건소	시·군 보건소

첨부서류

※ 서류 제출현황 (제출시 에 ‘V’ 체크)

- ① (공 통) 시험응시 신청서
- ② (공 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③ (공 통) 자가격리 통지(확인)서 또는 확진자 통지(확인)서
- ④ (확진자) 외출 및 시험응시 가능여부 포함된 주치의 소견서

상기 본인은

2021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별도 응시를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도시험장용)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2021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확진·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여부 확인을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휴대전화,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가 없을 시 수당입금 등이 불편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가 없을 시 수당입금 등이 불편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질병관리청, 관할 보건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응시자 확진·자가격리 여부 확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가 없을 시 수당입금 등이 불편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강원도지사 귀하

시험에 참여하는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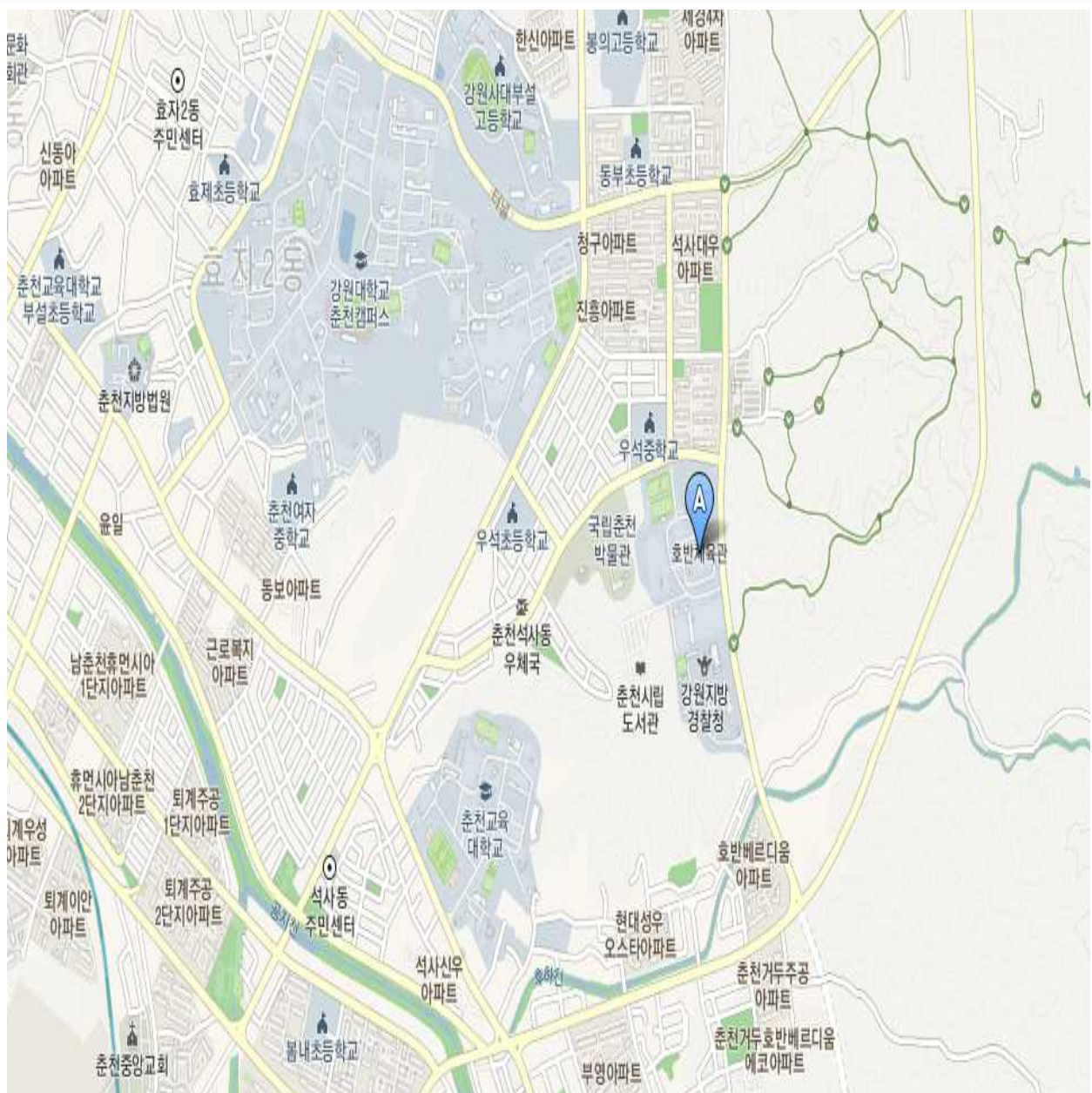
- 자가격리 장소(집)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며, 외출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이동 시 반드시 개인차량으로 이동해주시고, 가족차량으로 이동합니다(대중교통 이용 금지).
 - 가족차량으로 이동 시 보호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해주세요.
 -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세요.
 - 이동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해주세요.
 -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고사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참여하는 자가격리대상자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 차량 탑승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대상자와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자가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와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와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합니다.
- 식사가 필요할 경우 자가격리대상자와 별도로 분리하여 식사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자가격리대상자가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 시험장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집)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2021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장 약도

춘천 호반체육관



(주소)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우석로 102 (석사동 산29-3)